

	강의시간표작성규정	규정번호	3-4-3
		제정일자	2004.03.01.
		개정일자	2019.08.01.
		개정차수	16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정규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의시간표 작성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원 담당시수)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[별표]를 따른다.

② 초빙교원 및 특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임용계약으로 정한다.

③ 강사는 주당 최대 6시간, 산업체겸임교원은 주당 최대 9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 강사는 최대 9시간, 산업체겸임교원은 최대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.

제3조(시간표편성)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중 3일 이상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직교원은 예외로 한다.

② 강의시간은 이론과목을 기준으로 연속강의 4시간(실습 6시간)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③ 강좌의 개·폐 여부는 각호에 따른다.

1. 강좌 개·폐에 따른 수강인원 반영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

2.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은 40명 초과 시 분반할 수 있다.

3. 어학강좌를 제외한 교양이론강좌의 경우 80명 기준으로 편성하고 채플교과목의 경우, 대단위 강좌로 수업의 특성상 강의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4. 수강신청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. 다만,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.

④ 규정에 명시된 시간표 편성 기준을 준수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시간표 공고 및 변경) ① 확정된 시간표는 개강 10일전에 공고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강의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2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1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1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2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1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2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1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2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1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2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1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2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